

(주)교원라이프 회원약관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교원라이프(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 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장례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 1 회사로부터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신청 시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3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 4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철회권의 행사)

- 1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 의무)

- 1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회원증서에 기재한다.
- 3 회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로,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 4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5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6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추가 부담)

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상품금액의 10%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6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 1 회원이 월납부금의 완납이전에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장례 서비스 완료일에 잔여 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주소 변경 통보 의무)

- 1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8조 (장례 서비스의 이용)

- 1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회원이 지정한 자는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2 회원은 계약체결 시 장례 서비스의 이용자와 장례 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3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 4 장례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장례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장례 서비스의 제공지역)

- 1 회사가 제공하는 장례 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도서지역(단,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가능)을 제외한 회원이 지정한 전국의 장례 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나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근거리 동급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3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장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4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례 서비스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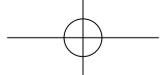
- 1 장례 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장례 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제11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 1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1 회원이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장례 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 환급율표 별첨 참조



< 해약환급금 산식 >

- 정기형 상품(총계약대금을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는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부정기형 상품(정기형을 제외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④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

■ 회원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삭제된 사본을 말함. 이하 같음),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가입자와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

■ 회원본인: 신분증, 회원증서, 예금주의 동의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예금주의 동의서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래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은 장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자동이체 약관]

① 지정한 이체일(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회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하여 자동납부 처리합니다.

② 자동납부를 위해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 예금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③ 이체지정일이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처리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의 임의로 정해집니다.

④ 계좌 잔액이 자동이체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잔액만큼 출금 처리합니다.

⑤ 본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회사와 회원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고의적으로 출금이체 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매월 대금결제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할부금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지정한 이체일에 출금되지 않으면, 다음 이체일에 재출금되며, 다음 이체일에도 출금되지 않으면 출금이 될 때까지 다음 이체일에 계속해서 출금을 시도합니다(이체일은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중 하루임).

공정거래위원회 중요정보 고시사항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규정에 의해 환급합니다.
-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 상품 내용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고객 불입금 관리방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	· 대성삼경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음. · 고객 불입금의 50%는 신한은행에서 채무지급보증하고 있음.
94,888,864,519원	109,112,051,511원	

<2017년 12월 결산 기준>